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나38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0나3820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2647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강현준, 신규철

변론 종결 2022. 3. 15.

판결 선고 2022. 7. 1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2647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34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587,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의 남편인 B은 2010. 11. 23.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16. 9. 13. E,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8. E, F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오피스텔인 서울 도봉구 G 4층 H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B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7. 1. 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400,256원을 양도소득세로 자신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는 2017. 9. 18.부터 2017. 10. 7.까지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 9월 말경 B에게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하였고, 2017. 11. 10.경 이 사건 양도 당시 B의 배우자인 피고 소유의 위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B에게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176,139,7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 11. 30.이다.

라. 도봉세무서는 B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1. 12.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시 I 임야 205m'(이하 '원주시 토지'라고 한다)를 압류하는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도봉세무서는 2018. 5.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주시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위 토지는 위 공매절차에서 25,010,000원으로 감정되어 2018. 11. 30. 제3자에게 27,111,000원에 매각되었다.

마. 한편 B은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인 2,300만원 수표(수표번호 K), 9,000만원 수표(수표번호 L), 2억 3,500만원 수표(수표번호M) 3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3억 4,800만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7. 3. 22. 도봉세무서에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한 관계로 자진납부한 증여세는 없다.

바.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세관실 체납추적팀은 2018. 3월 말경 도봉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19. 1. 25.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와 양도소득세 체납 및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한 후 2019. 6.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의 이 사건 조세채납액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2016. 11. 30.	2017. 11. 30.	176,139,720	25,958,120	37,406,390	187,587,990
-------	---------------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의 도봉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22. 원고 산하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업무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원고로서는 2017. 3. 22.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도봉세무서는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한 후 2018. 1. 12.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시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체납처분일인 2018. 1. 12.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18. 1. 1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한 후인 2019. 6. 12.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7. 3. 22. 도봉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②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는 세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산1팀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를, 재산2팀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재산법인세과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업무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부서인 사실, ③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제2팀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무렵인 2017. 9월경 B의 배우자인 피고를 여러 차례 만나 면담을 하였고,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등기·등록되거나 신고된 B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한 사실, ④ 도봉세무서는 B에게 원주시 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 1. 12. 원주시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8. 1. 12. 이 사건 체납처분 무렵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체납추적팀을 통하여 2019. 1. 25.경에 이르러 비로소 B의 이 사건 증여행위와 이 사건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9. 6.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재산1팀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신고업무를, 재산2팀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업무의 분장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B에 대한 세무조사와 경정고지 및 이 사건 체납처분 등의 체납업무는 재산법인세과 재산2팀이 처리한 반면,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신고에 관하여는 재산1팀이 처리하였는데, 피고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 신고로서 검토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② 재산2팀이 처리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 및 경정고지, 체납업무 등은 증여세 등의 신고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재산1팀의 업무와 그 성격이 다르고, 증여세 신고가 문제없이 검토 종결된 경우에는 재산1팀에서 처리했던 업무 내용을 재산2팀이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사업무를 담당한 재산2팀은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재산2팀 세무공무원인 담당자는 B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거기에 등록된 B의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와 이후 이 사건 양도대금 사용처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이후 피고의 부동산 취득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B 및 피고의 금융거래나 수표 추적조사 등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액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검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위 담당자는 2018. 3. 23.경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액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체납(정리보류자) 추적 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B에 대한 추적조사를 요청하는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를 보내면서 위 '양도대금 추적조사 검토조서'를 첨부하였다.

④ 재산1팀과 재산2팀이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소속된 팀이기는 하나, 그 담당업무 내용 및 성격이 다른 점,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위 두 팀이 서로 체납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과 이 사건 증여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위 업무들이 도봉세무서의 동일한 재산법인세과에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봉세무서를 관할하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사실과 사해행위 존재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도봉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국세청 내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증여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를 공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⑥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세관실 체납추적팀이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에 따라 도봉세무서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2019. 1. 25.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와 수표 추적을 통하여 이 사건 증여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2019. 1. 25.에 이르러 이 사건 증여행위 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경정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B이 2016. 11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2017. 11. 10. B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전액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추정 B이 2017.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억 4,8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1. 6.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원주시 토지	25,010,000원 ¹⁾ 원주시 토지 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1. 6. 당시 가격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8. 6. 1.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 25,010,000원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조세채무	176,139,720원
자기앞수표	348,000,000원		
예금채권	1,095,053원		
주식	7,895,800원		
합계	382,000,853원		176,139,720원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행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의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알았고, B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 9월경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B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예견을 할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증여일은 2017. 1. 6.이나,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는 그로부터 10개월 가량 지난 2017. 11. 10.경이므로 B로서는 일응 이 사건 증여 당시 1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로서는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다만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양도소득세 발생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증여 후 얼마되지 않은 2017. 1. 3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400,256원을 양도소득세로 자진신고·납부를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부는 정당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⑤ B이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상가 등'으로 표시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2013. 6. 25. 서울 도봉구 N아파트 O호를 매도할 때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1세대 3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⑥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미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매각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먼저 매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합하여도 100만원 정도²⁾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1억 7,000여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함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이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특별히 보유할 이유나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 차임이 63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B의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7,000만원과 근저당채무 4,800만원이 대부분인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⑦ B이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면 원주시 토지를 처분하였거나 도봉세무서의 업무분장을 알지 못하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으나, B은 원주시 토지를 처분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였다.

⑧ 원고는 B과 피고를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B과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을 면탈할 의도나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⑨ B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9억 5,000만원 중 수표로 4억 1,000만원을 지급받은 점이나, 피고에게 3억 4,8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증여함에 있어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교부한 점,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상당기간 금융기관이 아닌 B 개인이 보관하다가 이를 증여한 점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 산하 국세청이 수표 추적을 통하여 양도대금 사용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을 예상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⑩ B이나 피고가 공인회계사인 사위 P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N아파트 O호를 매도할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당시에 P와 상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상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섭

판사항기선

판사이상윤

1) 원주시 토지 가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일인 2017. 1. 6. 당시 가격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8. 6. 1.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 25,010,000원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는 대략 1억 4,000만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1억 3,100만원이므로 그 양도차액은 900만원에 불과하고 그 세율 6%를 적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5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1세대 1주택자로 양도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액과 같이 40여만원에 불과하다.